

경도인지장애판정자 서비스 제공 방안

복지위원회

목차

1. **경도인지장애 정의와 현황**
2.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문제점**
3.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정책 제안**

경도인지장애 개념 및 현황

-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능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

- 경도인지장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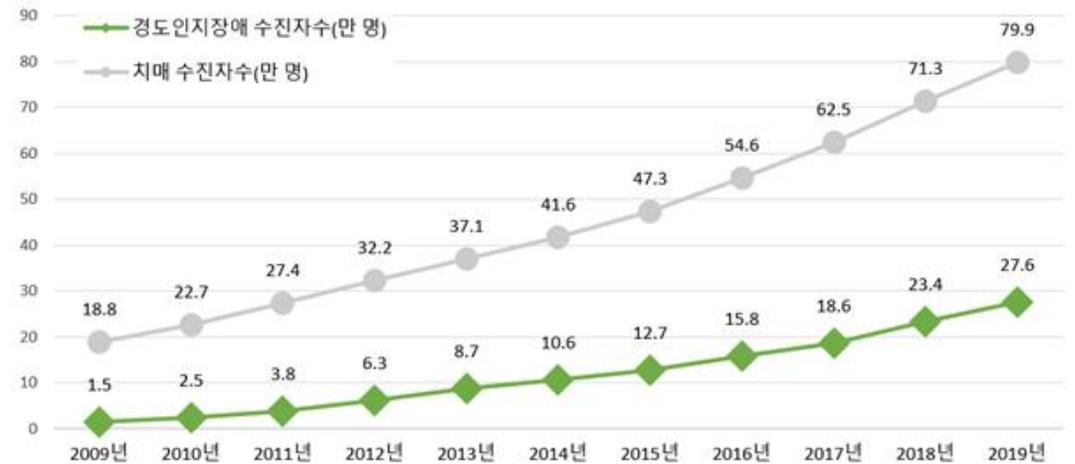
치매 전 단계의 고위험군 상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약 10~15%가 치매로 진행함을 보고

2019년 경도인지장애 수진자 수는 27만 6045명으로 최근 10년간 수진자 수가 19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

여성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수진자 수는 18만 8804명으로 남성의 2.2배

연령구간별로는 75~79세 6만 3327명, 70~74세 5만 6284명, 65~69세 4만 569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도 전체의 20%를 차지해 치매보다 더 낮은 연령에서 많음

[그림] 연도별 경도인지장애 수진자수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문제점

- 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

첫째, 경도인지장애 판정자들은 치매관리법상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와 병원의 진단을 받아 뇌기능 개선제 등 보험약을 처방 받으나 장기요양보험법상 5등급 이상의 치매관련 등급을 받기는 어려움

둘째, 당사자의 삶의 질, 치매 단계로 이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치매관리법 상 주기적인 검사 외에는 따로 관리 받는 것이 없음.

셋째, 우리나라의 치매관련 정보와 콘텐츠는 완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정보와 동영상으로, 가벼운 인자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 서비스는 부재함.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정책 제언

- 정책제언

- 중앙 정부

- 중앙치매센터의 당사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지방 정부

- 혼자 살거나 또는 일정 소득이하의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는 대상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으로는 뇌자극, 적정 영양/섭생, 적당 운동, 정서적 교감, 위생을 모니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복지 자원과 서비스 연계

- 기대 효과

-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늦춤으로써 당사자와 가족 삶의 질 유지

- 운동요법/치료사, 영양사, 상담사 등 치매 관련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서비스를 통해 등급판정을 늦추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원 지출 예방

- 입법 제언

- 치매관리법 개정: 제12조의3(경도인지장애판정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